

이사회 규정

▲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 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장을 선임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③ 이사회는 회사창립 및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회장을 역임한 분에 대하여 회사의 대외활동 및 경영에 대한 조언을 위해 명예회장 또는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 성)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 장)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직무대행에 관하여는 정관 제37조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종 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첫째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7 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권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각 이사는 이사회의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사회의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만일 위와 같은 이사의 요구에 이사회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자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 장소 및 안건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제 9 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경영진,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1 조 (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재무제표의 승인
 - (4) 정관의 변경
 - (5) 자본의 감소
 -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9)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2)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

(15)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공동대표의 결정

(3)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4) 신주의 발행

(5) 사채의 발행 및 사채발행의 대표이사 위임

(6) 준비금의 자본전입

(7)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8) 이사의 경업, 이사의 회사기회 및 자산의 유용, 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

(9) 중간배당

(10) 해외증권의 발행

(1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1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

(1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재결의

(14)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결정

(15)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17)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18)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9) 재무제표의 승인

(20) 배당의 결정

(21)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및 소각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규모 내부거래

4.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 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12 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의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는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항은 위원회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

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3 조 (위 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자문위원회)

이사회는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분야의 자문을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 15 조 (경영진)

① 정관 제41조 규정에 의거 회사는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

② 경영진은 대표이사가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경영진은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로 구분하며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및 경영진 중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라 칭하고 경영진은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있다.

④ 경영진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최고경영자가 정한다.

⑤ 각 경영진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 될 수 있다.

⑥ 경영진의 급여 및 상여금과 업무상 필요한 제경비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현저히 기여한 경영진에 대한 별도의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경영진은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사에 준한 책임을 진다.

제 16 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 및 경영진이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 (이사등의 의무)

- ① 이사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이사 또는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 ④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 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18 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 19 조 (이사회 지원)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